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 사업목적 : 지속가능 패션산업을 위한 브랜드 육성 및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 지원
-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4월 예정) ~ 2023. 11. 3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직접지원) 지속가능 의류 및 잡화 제작비 지원
 - (간접지원 ①) 추가 비즈니스·마케팅 지원
 - (간접지원 ②) 온라인 플랫폼 연계 유통지원
 - *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①의 경우 선정된 업체 전체 해당
 - * 간접지원 ②의 경우 선정 업체 중 우수 업체 5개 사 내외 한정 지원(종합점수 고득점 순)
- 지원규모 :

구분	의류*	잡화**
지원금 규모	최대 55,000천원×7개	최대 27,000천원×3개
지원 내용	시제품 40스타일 이상 (시즌 제한없음)	시제품 40스타일 이상 (시즌 제한없음)
자부담 금액 (총사업비***의 10% 이상)	6,200,000원 이상	3,000,000원 이상
* 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특수목적 의상 브랜드 및 소재 관련 기업 제외		
** 잡화 분야는 가방, 슈즈 제품에 한함(아이웨어, 악세서리 등 제외)		
*** 총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금		

- 지원대상 :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류, 잡화)
 - * 한국 국적의 디자이너가 사업체의 대표이거나 공동대표여야 함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모기업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기업에 한함)
 - * 의류 및 잡화(신발, 가방) 대상이며, 특수목적 의류(아동복, 한복, 이너웨어 등) 및 액세서리 제외
 - * 기업(회사) 및 디자이너 기준 1개 브랜드 선택으로 중복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세부조건 [사업안내서] 참조 필요)
 - 지속가능 실천 조건
 - ▶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생산공정 / 사용 후 폐기물 감축 / 제품 수명 연장에 대한 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하고 이행해야 함
 - ▶ 하기 지원 카테고리 중 10개 이상을 필수 선택·이행 하여야 함

구분	내용(안)
환경적 실천	1. 친환경 소재 사용(재생가능, 생물학적 분해 가능, 비건 소재 등 기타 환경친화적 소재) 2. 제작과정 개선(식물염색 등) 3. 무게/부피 축소에 따른 원료량 감축 4. 제품의 사용수명 연장(수명주기 관리, 절약/감소/재사용 유도 등) 5. 환경오염 방지(온실가스/탄소배출량 감축, 기후변화 대응) 6. 천연자원 소모 감축 7. 포장 및 물류과정 최적화
사회적 실천	1. 공정무역 2.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방지 3. 윤리적 생산과 소비 도모 4. 판매이익 기부 및 기금 조성, 임직원 캠페인 참여 등
경제/경영적 실천	1. 지속가능 관련 신소재 개발 2. 제품 생산공정/사용후 폐기물 감축(제로웨이스트 등) 3. 에너지 사용 절약 유도 4. 공유경제(대여, 교환, 수선 서비스 등) 5. 공정과정 단축, 경영 및 기술혁신 6. 투명한 정보공개(공정과정 등) 7. 윤리경영, 공정경쟁 등
문화적 실천	1. 정치적, 지역적, 사회적 관념 및 제약을 탈피한 디자인(화합, 상생 가치 포함) 2. 사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소수자 친화적 디자인(장애인, 임산부 등)

- ▶ **전체 시제품의 70% 이상**을 환경 및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환경·사회·경제·문화적 실천을 실행하는 기업(브랜드)**
- ▶ 문화적 지속가능성 실천을 위해 **시제품의 10% 이상**을 **소수자 친화·유니버설 디자인 또는 화합/상생 가치(젠더프리, 사회적 이슈 환기 등)**를 포함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출시해야 함

⇨ 전체 컬렉션의 70% 이상을 지속가능 스타일(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로 구성해야 함
 * 지속가능 스타일 수량 / 총 스타일 수량 * 100 → 70% 이상이 되어야 함
 ⇨ 전체 컬렉션의 10% 이상을 문화적 실천 관련 스타일(소수자 친화, 유니버설 디자인 등)로 구성해야 함
 * 문화적 실천 관련 스타일 수량 / 총 스타일 수량 * 100 → 10% 이상이 되어야 함
 ⇨ 문화적 실천 영역은 지속가능성 분야에 포함됨
 * ex) 전체 컬렉션(시제품) 100개 중 지속가능성 비율 70개(문화적 실천 스타일 10개 포함) 이상으로 구성

- 일반 조건

- ▶ **국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여 국내외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시제품 제작 완료시기 : ~ 2023년 10월 말까지(예정)
- ▶ 국내외 컬렉션, 전시, 수주회 등에 총 1년(2시즌) 이상 참여한 기업(브랜드)
- ▶ 국내외 매출실적 1년(2시즌) 이상 제출 가능 기업(브랜드)
- ▶ 기타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기준 대기업 및 계열사는 참여불가
[URL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가능하며, <2023년창의브랜드시제품제작지원>과 중복 접수 불가**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2. 23(목) ~ 3. 15(수) 11:00
- 접수기간 : **2023. 2. 23(목) ~ 3. 15(수) 11:00**
 ※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당일 지원자 접속 폭주에 따른 트래픽 발생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기한 1일전 사업신청서 제출완료**를 권장합니다.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 별첨한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
 -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주의사항
작성서류 (제공양식)	① 수행계획서	인감 날인된 PDF 파일과 hwp 원본 파일을 모두 제출 참여인력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②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엑셀 양식 그대로 제출 ※ 파일형식 변환 금지
	④ 과제개요	
	⑤ 참여인력 현황	
	⑥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외부발급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2년 매출증빙서류 ※ 양식1_수행계획서 內 매출실적 확인용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증빙가능 서류를 택하여 첨부)	PDF로 스캔하여 제출
	㉢ 포트폴리오(하단 순서 예시 참조) 1) 디자이너 프로필 2) 브랜드 소개 3) 룩북 및 컬렉션 주요 이미지(최근 2시즌) 4) 주요 제품군 라인시트(최근 2시즌) 5) 주요 PR실적, 판매실적 등	※ 브랜드 경쟁력 판단을 위해 가급적 필히 제출 ※ 용량 내 동영상 제출 가능 ※ 시즌기입 필수 ※ 용량 최소화하여 업로드 (별도 이메일 제출 불가)

***1차 서면심사 합격기관에 대해 ESG 지표 증빙 서류 추가 요청 예정**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 외 확장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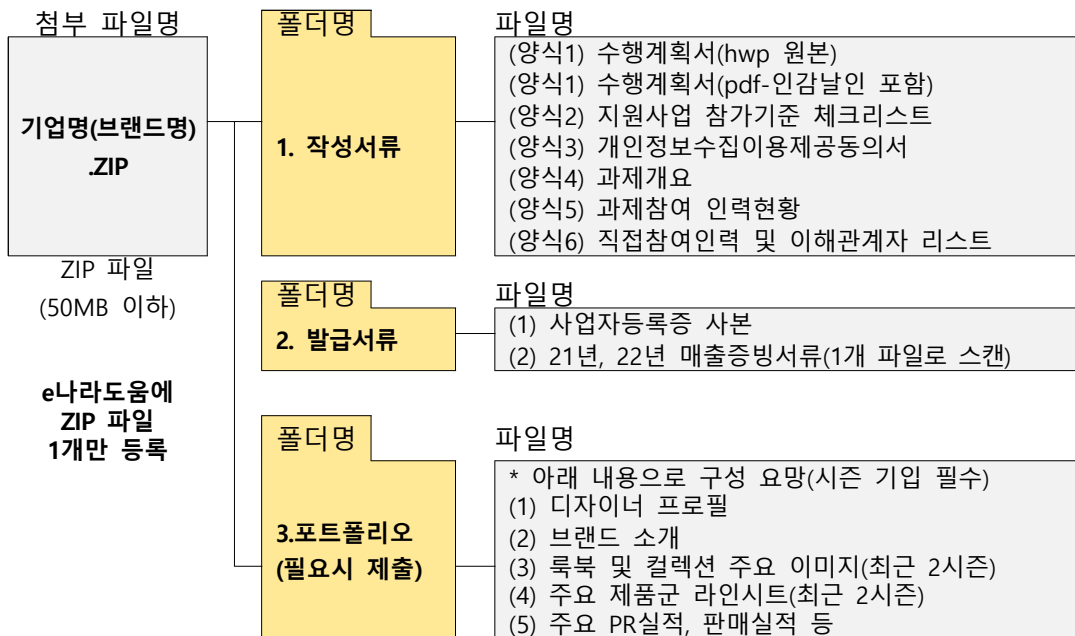
- 신청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수행계획서의 경우 **반드시 인감 날인**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한글 파일도 제출)하고, 이외 서류는 **직인 또는 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

- **과제명** 길게 작성하거나 문장부호(" ", [], () 등) 넣을 경우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깨지는 경우 발생하여, **15자 이내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폴더트리



○ 기타사항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용정보 미등록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용조사 제출서류: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은 서면평가 통과업체 대상으로 별도 안내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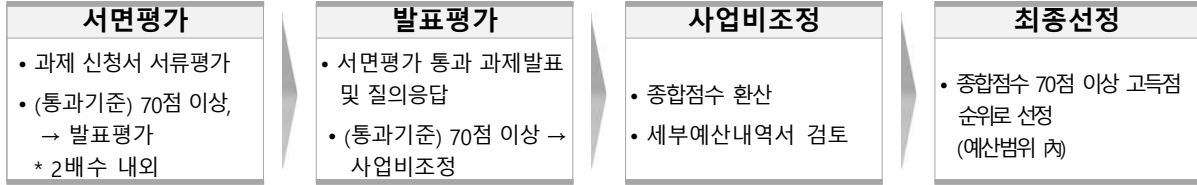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ESG 평가지표 확인을 위하여 해당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SG지표 제출서류: 종사자(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위탁 등의 고용인력 권익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지침/규약 등 존재할 시 제출 (추후 별도 안내 후 2일 이내 제출)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사업비조정을 통해 최종 선정



- 7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 구성 후 단계별 평가

- ※ 종합점수(100%) : 서면평가(30%) + 발표평가(70%)
- ※ 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 득한 기업에 한해 지원대상 선정
- ※ 단계별 세부내용 [사업안내서] 참조

○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평가지표		내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A. 수행기관 (10점)	수행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수행관리체계(일정) 마련 여부 유사과제 등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 	10
	기관전문성		
B. 참여인력 (10점)	참여인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인력의 참여율 적정성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 및 분야별 전문성(디자인, 세일즈, 홍보 등) 보유 여부 	10
	참여인력 전문성		
C. 사업비 (10점)	사업비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자부담 포함)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10
D. 과제기획력 (40점)	과제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지속가능 분야 인증마크, 활동 이력 등 보유 여부 및 구체성 유통 및 마케팅 세부 계획(온오프라인 활용 등) 	25
	기획 완성도		15
	유통 구체성		
E. 과제내용 (30점)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내용(디자인, 소재 등)의 차별적이고 참신한 정도 시장의 타 브랜드 및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생산공정 / 사용 후 폐기물 감축 / 제품 수명연장 계획 및 이행의 구체성·실효성 	30
	경쟁력		
	완성도		
합 계			100

- 2차 발표평가

평가지표		내용	배점										
구분지표	세부지표												
A. 수행기관 (15점)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데이터 조회 결과(※신용평가사 의뢰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 반영)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신용등급</th> <th>BBB이상</th> <th>BB~B</th> <th>CCC</th> <th>CC이하</th> </tr> <tr> <th>배점</th> <td>5점</td> <td>3점</td> <td>1점</td> <td>0점</td> </tr> </table>	신용등급	BBB이상	BB~B	CCC	CC이하	배점	5점	3점	1점	0점	5
	신용등급	BBB이상	BB~B	CCC	CC이하								
배점	5점	3점	1점	0점									
	추진의지	수행책임자의 과제 수행 의지, 각오	10										
E. 과제내용 (35점)	완성도	기획안의 착수 개시 가능 수준의 구체성, 현실성 확보여부,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등	15										
	차별성 경쟁력	제품 내용(디자인, 소재 등)의 참신성과 기존 제품들과의 차별성 시장의 타 브랜드 및 제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	20										
F. 기대성과 (44점)	경제적 성과	기대되는 매출 규모 및 성장 가능성	30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 정도(공공성, 투명성, 소비문화 개선 등)											
	목표(성과) 타당성	제시한 목표(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		14									
G ESG (6점)	일자리 창출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 2점 ※ 일자리 창출 계획 없을 시 0점, 계획이 있을 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채점	2										
	지역기업	주관기관의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0점, 그 외 지역 3점	3										
	윤리·인권 (종사자 권익보호)	고용인력 권익 보호 규약(정규, 비정규, 프리랜서, 위탁)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정상 제출 : 1점 ※ 일부제출·미제출 : 0점 ※ (서면합격시) 사내 약관, 규정, 지침 등 추가 제출	1										
합 계			100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문 등)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20%) 지급 					
참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파악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4.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5.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6.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8.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패션산업팀에서 지원받고 있는 2023년 과제가 총 3개 이상일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직/간접 패션지원사업은 동일연도 내 최대 3개 사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 사업을 초과하여 선정될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23년창의브랜드시제품제작지원,>과 중복 접수 불가 					
	구분	사업명	지원기간	해당시준	비고
	직접지원	2023 창의브랜드 시제품 제작지원	'23.04~'23.11	-	두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직접지원	2023 지속가능패션 제작지원	'23.04~'23.11	-	
	직접지원	2023 패션콘텐츠 제작지원	'23.04~'23.11	-	부문간 중복 신청 불가 (온라인콘텐츠/패션문화전시)
	간접지원	2023 컨셉코리아 뉴욕	'23.07~'24.04	24SS, 24FW	
	간접지원	2023 창의브랜드 수출지원공간(더셀렉트)	'23.01~'23.12	23FW, 24SS	기존 입점 브랜드는 금년선정 1회로 간주
	간접지원	2023 아이디어 기획개발 지원	'23.06~'23.12		
	간접지원	2023 해외수주회 및 쇼룸 참가지원	'23.05~'24.5	24SS 24FW	
위 7개 사업에서 최대 3개 사업까지 선정 가능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문의 : 조은성 대리(☎061-900-6457, canyon@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anualList.do) - 동영상 매뉴얼(https://www.gosims.go.kr/hg/hg002/retrieveMvpDtaList.do)
콘텐츠금융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용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에 신청한 콘텐츠(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기획 및 제작 중인 다른 콘텐츠(프로젝트)로도 콘텐츠금융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금융제도(투자·용자 유치 지원)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가치평가센터(☎02-6441-3658, assess@kocca.kr) - 금융상품별 공고(https://www.kocca.kr/cop/bbs/list/B0158960.do?menuNo=2038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우리원의 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우리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진원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21.4.)에 따라 동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 바~아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p> <p>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p> <p>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1인 보조사업자·일회성 단순 용역 제공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근거하여, 지원과제 수행 중 제42조에 따른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콘진원은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